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07호)

2025. 9.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5일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 조제3호의2 신설).

III. 검토의견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호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70조(기금의 용도)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u>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에 따른 <u>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u>
4. ~ 11. (생략)	4. ~ 11.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항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70조¹⁾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이 석탄발전 퇴출을 목표로 하는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²⁾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석탄화력발전소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1.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전체 58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폐지함에 따라 2038년까지 발전량을 70.9TWh로 비중을 10.6%까지 축소할 계획임.

<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단위: TWh, %) >

폐지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지역경제와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자원 확보,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폐지되는 석탄화력

연도	구분	원전	석탄	LNG	재생e	신e	청정수소 암모니아	기타	합계	탄소	무탄소 *
‘23년 (실적)	발전량	180.5	184.9	157.7	49.4	7.2	-	8.3	588.0	358.2	229.9
	비중	30.7	31.4	26.8	8.4	1.2	-	1.4	100.0	60.9	39.1
‘30년	발전량	204.2	110.5	161.0	120.9	18.7	15.5	11.8	642.6	302.0	340.6
	비중	31.8	17.2	25.1	18.8	2.9	2.4	1.8	100.0	47.0	53.0
‘35년	발전량	236.0	88.9	101.1	179.9	24.3	32.8	28.5	691.5	242.8	448.7
	비중	34.1	12.9	14.6	26.0	3.5	4.7	4.1	100.0	35.1	64.9
‘38년	발전량	248.3	70.9	74.3	205.7	26.4	43.9	34.9	704.5	206.7	497.8
	비중	35.2	10.1	10.6	29.2	3.8	6.2	5.0	100.0	29.3	70.7

* 무탄소발전 : 원전 + 재생 + 청정수소·암모니아

** 신규설비 중 '무탄소경쟁' 물량은 수소전소(0.7GW) 및 ESS연계형 태양광(0.8GW)으로 반영

*** 무탄소경쟁 시장 여건, 유보 물량 처리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소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현행법 제48조³⁾ 및 제70조제3호⁴⁾에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중복적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정되는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동법 제53조⁵⁾에 따라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⁶⁾를 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사업에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3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 2곳에 설립·운영 중이고, 센터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탄소중립전환을 지원하고, 산업일자리 전환을 위한 훈련성과 제고방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